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544
------	-----

2004년 9월 7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안일자 : 2004년 8월 19일
- 다. 회부일자 : 2004년 8월 23일
- 라. 상정일자 : 2004년 9월 7일

(제1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및 주요골자 (제안설명자 :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장석효)

□ 제안설명 요지

-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설치목적으로 보아 한시적 성격의 위원회이므로 청계천복원공사 준공일에 맞추어 그 존속기한을 정하고, 분과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의 직명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의 직제대로 변경하며, 청계천복원공사 준공일 당시의 위원임기를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 요 골 자

- 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존속기간을 청계천복원공사 준공일까지로 함 (안 제2조 제2항).
- 나. 각 분과위원회 당연직위원의 직명을 현직제에 맞춰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국장”으로, “환경관리실장”을 “환경국장”으로, “건설국장”을 “건설기획국장”으로, “교통관리실장”을 “교통국장”으로,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변경함 (안 제6조 2항).
- 다. 청계천복원공사 준공일 당시의 위원임기를 위원회의 존속기간까지로 함(안 제7조의 2항).

3. 검토 의견 (전문위원 안석수)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청계천복원공사의 준공일까지로 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의 직명을 현직제 대로 변경하며, 청계천복원공사 준공일 당시의 위원 임기를 위원회의 존속기한 까지로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 가. 시민위원회 존속기한 및 위원임기 관련 (안 제2조 및 제7조)
현행 조례에 따라 시민위원회는 8개 위원회 총 13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토록 규정되었으나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미규정 되어 있음.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설치목적상 한시적 성격의 위원회로서 복원공사가 완공되면 당연히 그 임무와 역할도 종료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복원공사 준공일까지로 하고, 위원의 임기도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규정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

- 나. 각 분과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의 직명 변경 관련 (안 제6조)
각 분과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의 직명을 “문화관광국장”에서 “문화국장”으로, “환경관리실장”에서 “환경국장”으로, “건설국장”에서 “건설기획국장”으로, “교통관리실장”에서 “교통국장”으로, “공보관”에서 “대변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3.1.10)과 동 조례시행규칙 개정(2003.1.15)에 따른 후속절차로 조례정비 차원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